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의 안 번 호 2195

제출연월일 : 2024. 7. 24.

제 출 자: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면허·등록, 위원회 위원의 위촉 또는 임원 선임 등 광범위한 분야의 직무에서 피한 정후견인을 배제시키고 있는바,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감정평가법인 등의 사무직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에 따른 면허·등록이나 위원회 위원 또는 임원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

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 피한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본인·배우자 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함(「민법」 제12조).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1조(「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 제2조(「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피성년후견인

제55조의2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피성년후견인
- 제3조(「골재채취법」의 개정)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제4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피성년후견인
- 제5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피성년후견인
- 제6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사무직원) ① 감정평가법	제24조(사무직원) ①
인등은 그 직무의 수행을 보조	
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직	
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13조(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①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다. 외국	
인이나 외국법인이 해당 국가에	
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	
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	2. 피성년후견인
<u>견인</u>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5조의2(운영위원회) ①・②	제55조의2(운영위원회) ①・②
(생 략)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③
해당하는 사람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
 2. 피성년후견인

 견인
 3. ~ 5. (생 략)

 ④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제15조(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골	
재채취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	<u>1. 피성년후견인</u>
<u>견인</u>	
2. 삭 제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제29조(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	
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	<u>1. 피성년후견인</u>
<u>견인</u>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제26조(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	
하안전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	<u>1. 피성년후견인</u>
<u>견인</u>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제17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u> 피한정후견인</u>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